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**발 의 자 : 정영길** 의원외 2명

2. **제정이유**

○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

○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**지원대상(안 제4조)**

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**운영비등 지원(안 제5조)**

■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

○ **지원계획 수립(안 제6조)**

•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

○ **운영 실태조사(안 제7조)**

•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

4. **관련법령**

○ 「노인복지법」

5. 검토의견

□ 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우리군도 이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앞으로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

□ 노인들의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사실 우리군의 경로당 대부분이 경로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. 따라서 경로당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건전하게 육성·발전할 수 있도록 **행·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**하기 위하여 **정영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**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주요내용은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11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

■ 경로당 운영비, 난방연료비,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수익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이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다만, 미신고된 경로당에 대한 조치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